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19가합1045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신현식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이상혁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에 2016. 1. 26. 체결된 위 회사의 영업권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708,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1,869,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농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은 생필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883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0,70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318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8. ‘소외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청과물대금 101,86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민사소송을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 26.경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E 소재 F마트(이하 ‘이 사건 영업장’)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9.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G’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을가 1,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은평세무서장에 대한 2020. 5. 15.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소외 회사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영업권 등 유무형의 재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708,000원, 원고 B에게

101,869,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2016. 1. 26. 체결되었는데, 원고들은 2016. 1. 28. 또는 2016. 3. 11.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제기일 무렵 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4. 10.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들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각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채권은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16. 1. 26.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업장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유무형의 재산이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영업장을 양도한 행위가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가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1. H과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매매대금(권리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H으로부터 위 영업장의 시설자산 및 영업권 등 모든 권리를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매장 임대차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 양수의 대가로 H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드러나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H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유무형의 재산이 법적으로 H

개인의 책임재산에 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유무형의 재산이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갑 6, 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은평세무서장에 대한 2021. 6. 4.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6. 1. 26.경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호, 판사 김서현, 판사 송현정